119구조・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약칭: 119법 시행규칙)

[시행 2023. 3. 31.] [행정안전부령 제387호, 2023. 3. 31., 일부개정]

소방청 (대응총괄과 - 구조.구급 총괄) 044-205-7562
소방청 (장비총괄과-소방항공총괄) 044-205-7682
소방청 (구조과) 044-205-7612
소방청 (119구급과) 044-205-7632
소방청 (소방항공과) 044-205-7707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「119구조・구급에 관한 법률」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술경연대회) ① 소방청장・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(이하 "소방청장등"이라 한다)은「119구조・구급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조・구급 기술의 개발・보급을 위하여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② 제1항에 따른 기술경연대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제3조(119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) ①「119구조・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른 119구조대(이하 "구조대"라 한다) 중 특별시・광역시・특별자치시・도・특별자치도(이하 "시・도"라 한다) 소방본부 및 소방서(119안전센터를 포함한다)에 설치하는 구조대에서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「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」및「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」에 따른다. <개정 2017. 1. 26., 2018. 12. 27.>

② 소방청에 설치하는 구조대에서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제4조 삭제 <2021. 7. 6.>

제5조(구조대의 출동구역)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구조대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 6. 20., 2014. 11. 19., 2017. 1. 26., 2017. 7. 26.>

1. 소방청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 및 테러대응구조대: 전국
2. 시・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 및 테러대응구조대: 관할 시・도
3. 소방청 직할구조대에 설치하는 고속국도구조대: 소방청장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
4. 그 밖의 구조대 : 소방서 관할 구역

② 구조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.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1. 지리적・지형적 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우
2.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
3. 그 밖에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6조(국제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)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국제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
1. 구조 및 인양 등에 필요한 일반구조용 장비

2. 사무통신 및 지휘 등에 필요한 지휘본부용 장비
3. 매몰자 탐지 등에 필요한 탐색용 장비
4. 화학전 또는 생물학전에 대비한 화생방 대응용 장비
5. 구급활동에 필요한 구급용 장비
6. 구조활동 중 구조대원의 안전 및 숙식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용 장비

② 제1항에 따른 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제7조(119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) ① 영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(이하 "구급대"라 한다) 중 시・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(119안전센터를 포함한다)에 설치하는 구급대에서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「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」에 따른다. <개정 2017. 1. 26., 2018. 12. 27.>

② 소방청에 설치하는 구급대에서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.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급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제7조의2(119구급차의 배치・운용기준) ①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119구급차의 배치기준은 「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」 별표 1 제4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그 밖에 119구급차 차량의 성능・특성, 표식 및 도장 등 표준규격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<개정 2017. 7. 26., 2019. 8. 1.>

[본조신설 2017. 1. 26.]

제8조(구급대의 출동구역)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급대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1. 26., 2017. 7. 26.>

1. 일반구급대 및 소방서에 설치하는 고속국도구급대: 구급대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관할 시・도
2. 소방청 또는 시・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고속국도구급대: 고속국도로 진입하는 도로 및 인근 구급대의 배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관련 시・도의 소방본부장 및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정한 구역

② 구급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.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1. 지리적・지형적 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우
2.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
3. 그 밖에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9조(119항공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)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・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항공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「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」 및 「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」에 따른다. <개정 2017. 1. 26., 2018. 12. 27., 2021. 1. 21.>

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하는 119항공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본적인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하되, 119항공대에 두는 항공기(이하 "항공기"라 한다)는 3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.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21. 1. 21.>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9항공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21. 1. 21.>

[제목개정 2021. 1. 21.]

제10조(119항공대의 출동구역) ① 119항공대의 출동 구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21. 1. 21.>

1. 소방청에 설치된 경우: 전국
2. 소방본부에 설치된 경우: 관할 시・도

②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형재난 등이 발생하여 항공기를 이용한 구조・구급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본부장에게 출동구역 밖으로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.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[제목개정 2021. 1. 21.]

제10조의2(119항공정비실의 시설 및 장비 기준)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에 갖추어야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는 격납시설
2.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계류장 및 이착륙 시설
3. 항공기 정비용 장비・공구・자재의 보관 시설
4.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수행을 위한 사무실 및 교육시설
5. 그 밖에 정비 등을 수행하기 위한 환기, 조명, 온도 및 습도조절 설비

② 제1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에 갖추어야 할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항공기를 기동시킬 수 있는 항공기동장비
2. 정비작업 지원을 위한 지상지원장비
3. 정비에 직접 사용되는 항공정비장비
4. 그 밖에 보유 기종별 특성에 맞는 정비장비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9항공정비실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2. 1. 6.]

[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<2022. 1. 6.>]

제10조의3(119구조견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) ① 법 제12조의4제4항에서 "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"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.

1. 119구조견(이하 "구조견"이라 한다) 및 구조견 운용자 출동 장비
2. 구조견 및 구조견 운용자 훈련용 장비
3. 구조견 사육・관리용 장비
4. 그 밖에 구조견 운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비

② 제1항에 따른 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1. 7. 6.]

[제10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10조의3은 제10조의4로 이동 <2022. 1. 6.>]

제10조의4(119구조견대의 출동구역) ①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119구조견대(이하 "구조견대"라 한다)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중앙119구조본부에 편성하는 구조견대: 전국
2. 시・도 소방본부에 편성하는 구조견대: 관할 시・도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견대는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1. 7. 6.]

[제10조의3에서 이동 <2022. 1. 6.>]

제11조(구조・구급요청의 거절)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조요청을 거절한 구조대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구조 거절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,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구급요청을 거절한 구급대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구급 거절・거부 확인서(이하 "구급 거절・거부 확인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,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제12조(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) ① 구급대원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급 거절・거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송을 거부한 응급환자 또는 그 보호자(이하 "이송거부자"라 한다)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이송거부자가 2회에 걸쳐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구급 거절・거부 확인서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.

② 구급대원은 이송거부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이를 목격한 사람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구급 거절・거부 확인서에 목격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한 후 목격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급 거절・거부 확인서를 작성한 구급대원은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, 구급 거절・거부 확인서를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제13조(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・인계) ① 소방청장등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구조된 사람, 사망자 및 구조・구급활동과 관련하여 회수된 물건을 인도하거나 인계하는 경우에는 명단(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상착의를 기재할 수 있다) 또는 목록을 작성하여 확인한 후 함께 인도하거나 인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② 제1항에 따른 인도・인계는 구조・구급상황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하되,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조・구급상황 발생 현장에서 인도・인계하기 쉬운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한다.

제14조(구급활동 지원) 소방청장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구급활동을 지원(자원봉사인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나 구급차에 배치하여 응급처치를 지도하게 하거나 직접 구급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6. 20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제15조(구조・구급활동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등의 현황관리) ① 소방청장등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 및 구조・구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구조・구급 지원요청 관리대장을 작성・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② 제1항에 따른 구조・구급 지원요청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・관리하여야 한다.

제16조(구조・구급활동에 필요한 조사) 소방청장등은 구조・구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통, 지리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제17조(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) ① 구조대원은 법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활동일지에 구조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,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. <개정 2020. 8. 5.>

② 소방본부장은 구조활동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제18조(구급활동상황의 기록유지) ① 구급대원은 법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구급활동일지(이하 "구급활동일지"라 한다)에 구급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,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. <개정 2020. 8. 5.>

②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의사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구급활동일지(제18조의2에 따라 이동단말기로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환자를 인계받은 의사의 서명을 받고, 구급활동일지(이동단말기에 작성한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이나 인쇄물을 말한다) 1부를 그 의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<개정 2020. 8. 5.>

③ 구급대원은 구급출동하여 심폐정지환자를 발견한 경우 또는 중증외상환자, 심혈관질환자 및 뇌혈관질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급활동에 관한 세부 상황표를 작성하고,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.<개정 2020. 8. 5.>

④ 소방본부장은 구급활동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제18조의2(이동단말기의 활용) 구조・구급대원은 구조차 또는 구급차에 이동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조・구급활동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확인서, 일지 및 상황표 등을 이동단말기로 작성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20. 8. 5.]

제19조(구조・구급증명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조대나 구급대에 의한 구조・구급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구조・구급증명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를 작성하여 소방청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1. 인명구조, 응급처치 등을 받은 사람(이하 "구조・구급자"라 한다)
2. 구조・구급자의 보호자
3. 공공단체 또는 보험회사 등 환자이송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위임을 받은 자

②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구조・구급증명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련 서류를 통하여 신청인의 신원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구조・구급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1.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공무원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
2. 위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3. 구조・구급자의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4. 그 밖에 구조・구급활동에 관한 증명자료가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
③ 구조・구급자의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구조・구급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보호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제19조의2(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통보) 영 제2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"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 통보서"란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말한다.
[본조신설 2021. 1. 21.]

제20조(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) 구조・구급대원이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근무 중 위험물・유독물 및 방사성물질에 노출되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와의 접촉 사실을 소방청장등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제21조(검진기록의 보관)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구조・구급대원이 퇴직할 때까지 「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」 제17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인사기록철에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1. 제20조에 따른 감염성 질병・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 및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진료 기록부
2.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정기건강검진 결과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진료 기록부
3. 그 밖에 구조・구급대원의 병력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

제22조(구조・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) 영 제27조제6항에 따른 구조・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은 별표와 같다.

제23조(구급차 등의 소독) 소방청장등은 주 1회 이상 구급차 및 응급처치기구 등을 소독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제24조(구조대원의 교육훈련) ① 법 제25조에 따른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은 일상교육훈련 및 특별구조훈련으로 구분한다. <개정 2022. 7. 21.>

② 일상교육훈련은 구조대원의 일일근무 중 실시하고 구조장비 조작과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.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22. 7. 21.>

③ 구조대원은 연 4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구조훈련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21. 7. 13.>

1. 방사능 누출, 생화학테러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화학구조훈련
2. 하천[호소(湖沼: 호수와 늪)를 포함한다], 해상(海上)에서의 익수・조난・실종 등에 대비한 수난구조훈련
3. 산악・암벽 등에서의 조난・실종・추락 등에 대비한 산악구조훈련
4. 그 밖의 재난에 대비한 특별한 교육훈련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<개정 2022. 7. 21.>

제25조(119항공대 소속 조종사 및 정비사 등에 대한 교육훈련) ① 법 제25조에 따른 교육훈련 중 119항공대 소속 조종사, 정비사 및 구조・구급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<개정 2021. 1. 21., 2022. 7. 21.>

1. 조종사
   가. 비행교육훈련
      1) 기종전환교육훈련(신규임용자 포함)
      2) 자격회복훈련
      3) 기술유지비행훈련
   나. 조종전문교육훈련
      1) 해상생환훈련
      2) 항공안전관리교육
      3) 계기비행훈련
      4) 비상절차훈련
      5) 항공기상상황관리교육
      6) 그 밖의 항공안전 및 기술향상에 관한 교육훈련
2. 정비사
   가. 해상생환훈련
   나. 항공안전관리교육
   다. 항공정비실무교육
   라. 그 밖의 항공안전 및 기술향상에 관한 교육훈련
3. 구조・구급대원: 연 40시간 이상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표함하는 항공구조훈련을 받을 것
   가. 구조・구난(救難)과 관련된 기초학문 및 이론 교육
   나. 항공구조기법 및 항공구조장비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교육
   다. 항공구조활동 시 응급처치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교육
   라. 항공구조활동과 관련된 안전교육
   마. 그 밖의 항공구조활동에 관한 교육훈련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<개정 2017. 7. 26.>

[전문개정 2017. 1. 26.]

[제목개정 2022. 7. 21.]

제26조(구급대원의 교육훈련) ① 법 제25조에 따른 구급대원의 교육훈련은 일상교육훈련 및 특별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.

② 일상교육훈련은 구급대원의 일일근무 중 실시하고 구급장비 조작과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.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22. 7. 21.>

③ 구급대원은 연간 4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소방청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구급대원의 업무과중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구급대원이 이수해야 하는 연간 특별교육훈련 시간을 줄임할 수 있다.<개정 2014. 7. 15., 2023. 3. 31.>

1. 임상실습 교육훈련
2. 전문 분야별 응급처치교육
3. 그 밖에 구급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

④ 소방청장등은 구급대원의 교육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는 응급처치용 실습기자재와 실습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⑤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소방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구급전문교육사로 선발할 수 있다.<개정 2019. 8. 1., 2023. 3. 31.>

1.「의료법」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
2.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제36조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급대원의 교육훈련 및 구급전문교육사의 선발・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<신설 2019. 8. 1., 2023. 3. 31.>

부칙 <제387호,2023. 3. 3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구급지도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구급지도관은 제26조제5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선발된 구급전문교육사로 본다.